

# 안양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정 2000. 3. 1.

개정 2024. 12. 26.

대학원 교학과 031-467-0853

##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기독교 정신과 한구석 밝히기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창출과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여 인류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조직)** 본교에는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대학원
2. 특수대학원: 대신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글로벌대학원

**제3조(과정)** ① 대학원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를 거치지 않고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1. 일반대학원 :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통합과정
2.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② 본교 대학원에는 연구기관·산업체·정부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본교의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둘 수 있다.

④ 본교 대학원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조의 2(계약학과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가, 지방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학부(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01.30.]

**제3조의 3(박사학위 과정 신설)**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할 경우 설치기준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2 제1항, 제2항, 별표 1의 2에 따른다. 별표 1의 2에 따른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인문·사회 계열 : 4편 이상

2. 예·체능 계열 : 3편 이상
3. 자연과학·공학 계열 : 6편 이상

[본조신설 2024. 2. 21.]

**제4조(입학정원)** ① 각 대학원에 설치된 과정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② 대학원에서 별도로 지정한 학과는 이중언어과정으로 학위과정을 개설하여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입학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01.30.>

**제5조(준용)** 대학원 학사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대학 학칙 및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 장 입학, 편입학, 재입학

**제6조(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편입학·재입학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로 한다.

**제7조(입학자격)** ①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입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② 박사과정에 입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자격을 구비 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③ 신학대학원은 ①항에 해당하고 수세 후 3년 이상 된 자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본교에서 인정하는 교단의 목사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본교 신학과 전임교수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타 교단 출신자의 경우는 해당 교단 목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자는 ①항에 해당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1.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 소지자
2. 현직교사

⑤ 본교의 전임교원은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과 회의를 거쳐 각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입학에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전형 방법은 각 대학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면접시험, 서류심사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자격은 타 대학원에서 동일 또는 유사전공자에 한한다.

**제10조(재입학)** 재입학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정원의 입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2. 북한이탈주민
3.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4.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5.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제12조(입학의 취소)**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있어 학력 및 자격, 제출된 증명서에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입학을 취소하며 제출된 서류와 입학금 및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 3 장 학적

**제13조(휴학)** ① 휴학하려는 자는 지정한 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석사는 2년(4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은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군휴학, 출산 및 육아휴학, 질병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 30.>

③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은 첫학기는 휴학 할 수 없다. 단, 군입대, 출산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④ 창업으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14조(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을 원하는 경우는 매학기 개시일 전까지 복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경우 자퇴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제적)**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제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재학연한이 경과한 자
2. 등록기간이 경과 하여도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휴학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4. 제41조에 따라 학위수여가 취소된 자

**제17조(전과)** 전과 및 전공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전과를 희망하는 학과의 주임 교수의 승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이수한 교과목은 전공 또는 공통선택으로 인정한다. 단, 편입으로 입학한 학생의 전과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개정 2024. 6. 20.>

**제17조2(세부전공의 변경)** 세부전공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변경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01.30 ]

**제18조(과정변경)**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가 통합과정으로 학위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제 4 장 등록, 수업, 및 성적

**제19조(등록)** ① 등록은 정규등록,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 ② “정규등록”은 학칙에서 규정한 각 과정별 수업연한까지의 등록을 말하며 기간 내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재학연한 내에서 수료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정규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③ “연구등록”은 소정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추가 연구(교내·외 연구사업 참여 포함) 및 학위논문(졸업연주)이 진행 중인 자의 등록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 등록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01.30.>
- ④ 자격시험 미통과로 수료 처리된 경우에는 연구등록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학년도·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단, 2학기 수업의 시작은 2주를 경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 1 학기는 소급일 전일까지로 한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3. 계절수업 :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4. 유연학기 : 수업기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수업)** ① 일반대학원과 대신신학대학원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야간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1.30.>

- ② 특수대학원 수업(대신신학대학원 제외)은 야간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주간수업, 계절제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1.30.>

③ 출석수업 외에 방송 또는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

**제22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①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매 학년도 2주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휴업일의 경우 보강일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23조(수업연한)** ①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경영행정대학원 : 2년 <개정 2024. 2. 21.>

2.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3년

3. 교육대학원, 글로벌대학원 : 2년 6개월 <개정 2024. 2. 21.>

4. 대신신학대학원 : 신학과 2년, 목회학과 3년 <개정 2024. 2. 21.>

②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한다. 단 석·박사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석사 및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수업연한의 단축)** ① 학과 및 전공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설치·운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호에 따라 단축할 수 있으며 설치현황은 별표 3에 따른다.

1. 석사과정 : 1년 이내

2. 박사과정 : 6개월 이내

3. 석·박사 통합과정 : 1년 6개월 이내

②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의 수료 기준을 충족한 자는 1학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업 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단,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운영 중인 학과 및 전공에 재학 중인 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전체 평균 평점이 4.0 이상으로 수업연한의 단축을 원하는 자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4학기 초에 단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1.30.>

2. 4학기 전체 평균평점이 4.0 미만인 경우는 단축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01.30.>

**제25조(재학연한)** ① 대학원별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은 5년, 박사과정은 8년, 통합과정은 10년으로 한다.

2. 신학대학원 신학과는 4년, 목회학과는 6년으로 한다.

3. 교육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글로벌대학원은 5년으로 한다.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편입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본교 재학연한에서 편입시 인정받은 학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제26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각 대학원 및 학과별로 상호 조정하여 교과목을 공동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③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대학원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이수단위)** ① 교과목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학기 15시간의 수업을 1학점

으로한다.

② 22조 2항의 경우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28조(이수학점)** 학위취득을 위한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6. 20.>

1. 석사과정 : 전공 24학점 이상 또는 학위논문 대체 요건을 이수한 자  
가. 신학대학원 목회학과는 전공 93학점 이상 또는 학위논문 대체 요건을 이수한 자  
나.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상담심리전공은 이수학점에 교직 4학점을 포함한다. 단,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1.30.>

2. 박사과정 : 전공 36학점 이상

3. 통합과정 : 전공 54학점 이상

**제29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강의시간표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 학점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일반대학원 박사 및 통합과정 : 12학점

2.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 9학점

3.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 9학점, 단 대신신학대학원 목회학과는 20학점 <개정 2024. 6. 20.>

③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학과별·전공별 교육과정으로 정한다.

④ 소속학과 주임교수가 승인하는 경우는 10학점 이내에서 타 대학원 또는 타 학과(전공)에서 개설된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3.01.30.>

⑤ 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이외의 과목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입학한 학과가 학위의 취득학과(편입생의 경우 편입전의 학과)와 다를 경우는 학과 또는 전공 과정에서 지정하는 소정의 선수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⑥ 계절수업으로 수강 가능한 학점은 각 과정별 수료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성적평가)** 성적의 평가는 중간평가와 기말평가로 구분한다.

1. 중간평가 : 수업일수 1/2선 전·후에 실시

2. 기말평가 : 학기말에 실시

**제31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시험, 과제평가, 출석 등을 참작하여 부여하며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등급	평점	점수
A+	4.5	95~100
A	4.0	90~94
B+	3.5	85~89
B	3.0	80~84
C+	2.5	75~79
C	2.0	70~74
F	0	0~69

② 별도로 정하는 과목은 P/NP로 평가할 수 있으며 성적 평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2조(편입학자 학점인정)** 타 대학원으로부터 편입한 자는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1/2까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33조(학점교류)** 학점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의 1/2까지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 제 5 장 수료 및 학위수여

**제34조(수료)** ① 수료의 인정은 매 학기말에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학위 수여에 필요한 학점 및 성적(평점평균 3.0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23.01.30.>

② 통합과정에서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석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수료에 필요한 추가 운영 사항은 학과 내규로 따로 정한다.

④ 수료 후 재학연한이 경과하면 영구수료 처리되어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단, 학위논문 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자에게는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를 거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35조(자격시험)** ①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서 실시하는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전공종합시험으로 구분하며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응시대상·자격·절차·시험과목·평가기준, 출제위원 선정 및 면제기준 등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① 석사 또는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조건 이외에도 학과별로 추가하여 구비조건을 정할 수 있다.

1. 자격시험의 합격

2. 석사과정 : 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취득 예정인 자

3. 박사과정 : 박사과정 또는 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취득 예정인 자

② 학위논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대학원장은 1개월 이내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논문 제출 자격의 결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논문 작성 자격을 부결 하였을 때에는 제출 서류 및 논문심사료를 반환한다.

**제37조(연구윤리)** 학위논문의 표절 및 연구부정행위 등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8조(학위수여)** ① 소정의 과정 및 자격시험을 이수하고 논문이 통과된 자에게는 별지 <서식 1>에 따라 <별표 1>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3.01.30.>

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2.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

② 석사과정의 경우 대학원장이 사전 승인한 별도의 방법으로 학위논문을 대체한 자

③ 학위수여는 학기말에 수여하며 명예박사의 학위수여일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명예박사의 학위수여)**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40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학위수여 취소)** ① 학위를 받은 자가 그 학위과정 이수 중에 학생 신분에서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을 경우 또는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 제 6 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42조(공개강좌)**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43조(연구과정)** ① 각 대학원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자격의 입학자격은 제7조 규정에 의한다.

③ 연구과정의 수학연한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대학원별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서식2>에 따른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 제 7 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44조(지도교수)** ① 대학원장은 학생의 수업과 연구계획의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위촉한다.

② 지도교수는 학생의 과정 이수를 위한 연구계획서 제출로부터 학위 논문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생활과 학문연구를 지도한다.

③ 학생의 연구계획서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논문 지도교수에게는 소정의 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장학금 및 연구비)**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태도가 성실한 자에게는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대상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6조(포상)** 대학원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47조(징계)** ① 대학원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총장이 이를 징계한다.

② 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안양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 제 8 장 위원회

**제48조(대학원위원회)** ① 본교에 설치된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며, 각 대학원장(당연직)과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이 된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과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학사운영위원회)** ① 대학원 학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 별로 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 및 주임교수를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심사·수료심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장학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위탁과정에 관한 사항 및 대외 전문 연구인력과의 유기적 학술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중장기발전계획 및 대학원 특성화에 대한 과제 연구
6. 학위과정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9 장 학칙 변경

**제50조(학칙의 변경)** 학칙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무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부 칙

1. (시행일)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일)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준용규정)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4. (시행세칙)이 학칙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 또는 시행내규로 정 한다.
5. (개정일)이 학칙 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개정일)이 학칙 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7. (개정일)이 학칙 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8. (경과규정)2003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은 종전 학칙과 규정을 따른다.
9. (개정일)이 학칙 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10. (개정일)이 학칙 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11. (준용)첨단산업기술대학원은 모든 재학생의 학위과정 및 학위수여 절차가 완료되면 폐원한다.
12. (개정일)이 학칙 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13. (개정일)이 학칙 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 학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편성 및 입학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 ① 교육대학원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제4조(학과와 정원)의 학과편성 및 입학정원을 적용한다.
  - ② 신학대학원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제4조(학과와 정원)의 학과편성 및 입학정원을 적용한다.
  - ③ (과정폐지에 따른 경과조치)2009년도부터 신학대학원의 목회학과 M.A.(전공)과정을 폐지함에 따라 현재 재적중인 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에 복적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 학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편성 및 입학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 ①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제4조(학과와 정원)의 학과편성 및 입학정원을 적용한다.
  - ② (과정폐지)2011학년도부터 첨단산업기술대학원은 모든 재학생의 학위과정 및 학위 수여 절차가 완료되면 폐원한다.
3. (개정일)이 학칙 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편성 및 입학정원에 관한 경과조치)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제4조(학과와 입학 정원)의 학과편성 및 입학정원을 적용한다.
3. (과정신설))2014학년도부터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신설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 학칙은 2014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 학칙은 201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편성 및 입학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 ①교육대학원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제4조(학과와 정원)학과편성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 학칙은 2015년 11월 1 일 부터 시행한다.
2. (과정폐지)2015학년도부터 교육대학원의 영양교육전공 과정을 폐지한다.
3. (과정폐지)2016학년도부터 교육대학원의 교육행정 전공(강화캠퍼스)과정을 폐지한다.
4. (과정신설))2016학년도부터 일반대학원의 화장품발명디자인학과 석사과정을 신설한다.
5. (학과편성 및 입학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 ① 교육대학원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제4조(입학정원)학과편성을 적용한다.  
-강화캠퍼스 「교육행정전공」 15명-> 안양캠퍼스로 인원 이동
  - ② 교육대학원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전공」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

다.

- 학과명칭변경: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전공」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 6. (경과조치)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 7. (시행일)이 개정 학칙은 2015년 12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 8. (학위과정 신설)2016학년도부터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통합과정을 신설한다.

####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 학칙은 2016년 11월 9일 부터 시행한다.
2. (과정폐지)2017학년도부터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계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를 폐지한다.
3. (과정폐지)2017학년도부터 교육대학원의 「국어교육, 영어교육, 교육행정 전공」 과정을 폐지한다.
4. (과정신설))2017학년도부터 일반대학원의 ICT융합학과 석사과정을 신설한다.
5. (과정신설))2017학년도부터 교육대학원의 「독서논술창작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6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특수대학원 신설)2018학년도부터 글로벌복지상담대학원을 신설한다
2. (과정신설)2018학년도부터 글로벌복지상담대학원 상담학과를 개설한다.
3. (과정신설)2018학년도부터 글로벌복지상담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한다.
4. (과정신설)2018학년도부터 일반대학원의 화장품발명디자인학과 박사과정을 신설한다.
5. (과정신설)2018학년도부터 일반대학원의 화장품발명디자인학과 석박사통합과정을 신설한다.
6. (학과편성 및 입학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경영행정대학원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제5조(입학정원)학과편성을 적용한다. -강화캠퍼스 10명
7. (시행일)이 개정 학칙은 2017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이 개정 학칙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9. (대학원명칭변경)2018학년도부터 「글로벌복지상담대학원」 -> 「글로벌대학원」 으로 명칭변경.
10. (신설)2018학년도부터 글로벌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 와 「퍼포밍아트학과」 를 신설한다.

11. (시행일)이 개정 학칙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 학칙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 학칙은 202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21조의2(학기)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

- 1.(시행일)이 개정 학칙은 202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2.(과정신설) 2022학년도부터 글로벌대학원 기후환경학과, 융합교육학과(이중언어과정, 비사범계열)을 신설한다.
3. 2022학년도 2월 졸업자부터 학위기에 세부 전공을 표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2.(정원조정)2023학년도부터 특수대학원 정원을 조정한다.
  - ① 신학대학원 60명 → 30명
  - ② 경영행정대학원(안양) 25명 → 55명
- 3.(명칭변경) ①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대학원은 일반대학원으로 변경한다.
  - ②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신학대학원은 대신신학대학원으로 변경한다.
  - ③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육대학원 독서논술창작교육전공은 독서논술교육전공으로 변경한다.
  - ④ 2023학년도부터 글로벌대학원 융합교육학과의 창의융합교육전공은 융합교육전공으로, 문화예술교육전공은 예술교육전공으로 변경하며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4. (학과신설)① 2023학년도부터 일반대학원에 박사 및 통합과정으로 융합교육학과(고등교육전공, 예술교육전공, 교육심리전공)를 신설한다.
  - ② 삭제 <2023. 4. 28.>
  - ③ 2023학년도부터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음악학과(관현악전공, 지휘전공, 성악전공, 피아노전공, 반주전공)를 신설한다.
  - ④ 2023학년도부터 경영행정대학원에 헬스케어매니지먼트학과를 신설한다.
  - ⑤ 2023학년도부터 글로벌대학원에 예술학과(디자인전공, 무용전공, 일반예술전공)를 신설한다.

5. (학과 폐지) ① 2023학년도부터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경영학과, ICT융합학과를 폐지한다.
- ② 2023학년도부터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고등교육전공, 교육경제학전공, 예술교육전공을 폐지하고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까지 운영한다. 다만, 이후에 재적자 또는 복학자가 있는 경우에는 융합교육학과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 ③ 2023학년도부터 글로벌대학원 상담학과를 폐지하고 교육과정은 2023학년도까지 운영한다. 다만 이후에 재적자 또는 복학자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및 청소년상담교육전공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6. (소속 변경) 2023학년도부터 글로벌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모집을 정지하고 경영행정대학원에서 모집한다. 단, 글로벌대학원 사회복지학과의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까지 운영하며 이후에 재적자 및 복학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7. (세부전공 운영) ①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에 글로벌경영전공, 예술경영학전공을 운영한다.
- ② 글로벌대학원 퍼포밍아트학과에 피아노전공, 성악전공, 관현악전공, 지휘전공, 실용음악보컬전공을 운영한다.
8. (경과조치) 학과로 입학한 자가 세부전공의 이수를 원하는 경우는 세부전공 신청서를 받아 주임교수의 승인 후 이수할 수 있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명칭변경) ① 2024학년도부터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아동보육행정전공은 행정학과 아동교육보육행정전공으로 변경하며,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 ② 2025학년도부터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전공을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으로 변경한다.
3. (학과신설) ① 2024학년도부터 일반대학원에 박사 및 통합과정으로 융합예술학과 (미술전공, 디자인전공, 음악전공, 예술학전공)를 신설한다.
4. (수업연한 변경) ① 2025학년도부터 경영행정대학원의 수업연한을 2년 6개월에서 2년으로 변경한다.
5. (학위명 변경) ① 2025학년도 입학자부터 일반대학원 신학과의 학위명을 철학박사로 변경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신설) ① 2025학년도부터 일반대학원에 석사, 박사, 통합과정으로 소프트웨어

학과를 신설한다.

- ② 2025학년도부터 글로벌대학원에 석사과정으로 K콘텐츠비즈니스학과(K콘텐츠비즈니스전공)를 신설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4. 6. 20., 2024. 10. 30.>

## 입학정원 및 학위명

### <일반대학원>

계열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과	학위명	모집정원	학과(박사)	학과(석박사통합)	학위명	모집정원
인문사회	신학과	신학석사	20	신학과	신학과	철학박사	63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학석사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학박사	
				교육학과 - 유아교육전공 - 교육심리및상담전공 - 교육학전공 - [폐지 2022.] - [폐지 2022.] - [폐지 2022.]		교육학박사	
				경영학과 - 경영학전공 - 글로벌경영전공* - 예술경영전공*	경영학과 - 경영학전공	경영학박사	
				행정학과 - 복지행정전공 - 일반행정전공		행정학박사	
				융합교육학과* - 고등교육전공 - 교육심리전공 - 예술교육전공 - 교육학전공	융합교육학과* - 고등교육전공 - 교육심리전공 - 예술교육전공 - 교육학전공	교육학박사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공학박사	
				도시정보공학과	도시정보공학과	공학박사	
				환경공학과 - 기후환경전공 - 일반환경전공 - 해양생태환경전공 - 미세먼지관리전공	환경공학과 - 기후환경전공 - 일반환경전공 - 해양생태환경전공 - 미세먼지관리전공	공학박사	
공학	도시정보공학과	공학석사					
	소프트웨어학과	공학석사		소프트웨어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공학박사	
예체능	화장품발명디자인학과	디자인학석사		화장품발명디자인학과	화장품발명디자인학과	디자인학박사	
	음악학과 - 관현악전공 - 반주전공 - 성악전공 - 작곡전공 - 지휘전공 - 피아노전공 - 실내악전공	음악학석사		음악학과 - 관현악전공 - 반주전공 - 성악전공 - 지휘전공 - 피아노전공 - 뉴미디어음악 전공		음악박사	
				융합예술학과* - 미술전공 - 디자인전공 - 음악전공 - 예술학전공	융합예술학과* - 미술전공 - 디자인전공 - 음악전공 - 예술학전공	예술학박사	

\* 이중언어과정

<특수대학원>

대학원명	계열	석사과정		모집정원	
		학과	학위명		
대신 신학대학원	인문사회	신학과(Th.M) - 가족상담학전공 - 선교학전공	신학석사(가족상담학) 신학석사(선교학)	30	
		목회학과(M.Div.) - 목회학전공	목회학석사(M.Div)		
교육대학원	인문사회	상담심리전공	교육학석사(상담심리)	80	
		유아교육전공	교육학석사(유아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교육학석사(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청소년상담교육전공	교육학석사(청소년상담교육)		
		독서논술교육전공	교육학석사(독서논술교육)		
경영행정 대학원	안양	인문사회	경영학과 - 경영학전공 - 교정학전공	경영학석사(경영학) 경영학석사(교정학)	55
			행정학과 - 일반행정전공 - 아동교육보육행정전공	행정학석사(일반행정) 행정학석사(아동교육보육행정)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학석사(관광경영)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헬스케어매니지먼트학과	경영학석사(헬스케어매니지먼트)	
	강화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전공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10
글로벌대학원	인문사회	인문사회	글로벌경영학과* - 경영학전공 - 예술경영학전공	경영학석사(경영학) 경영학석사(예술경영학)	50
			융합교육학과* - 융합교육전공 - 예술교육전공	교육학석사(융합교육) 교육학석사(예술교육)	
	자연과학	자연과학	기후환경학과 - 미세먼지관리전공	이학석사(미세먼지관리)	
	예체능	예체능	퍼포밍아트학과* - 관현악전공 - 성악전공 - 실용음악보컬전공 - 지휘전공 - 피아노전공	예술학석사(관현악) 예술학석사(성악) 예술학석사(실용음악보컬) 예술학석사(지휘) 예술학석사(피아노)	
			예술학과* - 디자인전공 - 무용전공 - 미술전공 - 예술학전공	예술학석사(디자인) 예술학석사(무용) 예술학석사(미술) 예술학석사(예술학)	
			K콘텐츠비즈니스학과 - K콘텐츠비즈니스전공	문화예술학석사(K콘텐츠비즈니스)	

\*이중언어과정

<별표 2>

## 이수학점

### <일반대학원>

과정	학과	이수학점	
		논문제출자	논문대체자
석사	신학과	24	1)30 2)KCI등재 후보지 이상 논문집에 논문 게재
	관광경영학과		30
	도시정보공학과		33
	환경공학과		30
	소프트웨어학과		30
	음악학과		24, 졸업연주
	화장품발명디자인학과		30
통합	신학과	54	-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도시정보공학과		
	환경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화장품발명디자인학과		
	융합교육학과 *		
융합예술학과 *			
박사	신학과	36	-
	교육학과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행정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도시정보공학과		
	환경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화장품발명디자인학과		
	음악학과		
	융합교육학과 *		
융합예술학과 *			

〈특수대학원〉

대학원명	과정	학과	이수학점	
			논문제출자	논문대체자
대신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24	30
		목회학과(M.Div.)	93	97
교육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전공	24	30
		유아교육전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청소년상담교육전공		
		독서논술교육전공		
경영행정대학원	석사	경영학과	24	30
		행정학과		
		관광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헬스케어메니지먼트학과		
글로벌대학원	석사	기후환경학과	24	30
		K콘텐츠비즈니스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융합교육학과*		
		예술학과*		
		퍼포밍아트학과*		24, 졸업연주

&lt;별표 3&gt; &lt;개정 2024. 12. 26.&gt;수업연한 단축학과

구분	과정	학과	수업연한
일반 대학원	박사	교육학과(이중언어과정), 융합교육학과, 융합예술학과	2년6개월
	석·박사통합	신학과,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환경공학과, 화장품발명디자인학과, 융합교육학과, 도시정보공학과, 융합예술학과, 소프트웨어학과	4년
글로벌 대학원	석사	글로벌경영학과, 퍼포밍아트학과, 융합교육학과, 예술학과	1년6개월

<서식 1-1> 박사과정 학위기

박 제 호

## 학 위 기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학과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제출한 논문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되어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안양대학교 대학원장 (학위명)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안양대학교 총 장 (학위명) ○ ○ ○ (인)

학위번호 : 안양대 ○○○○(박) ○○○

<서식 1-2> 석사과정 학위기(1)

석 제 호

## 학위기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학과○○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제출한 논문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되어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안양대학교 대학원장 (학위명)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 ○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안양대학교 총 장 (학위명) ○ ○ ○ (인)

학위번호 : 안양대 ○○○○(석)○○○

<서식 1- 3> 석사과정 학위기(2)

석 제 호

## 학 위 기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학과/○○○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년 ○○월 ○○일

안양대학교 ○○대학원장 (학위명)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안양대학교 총장 (학위명) ○ ○ ○ (인)

학위번호 : 안양대 ○○○○(석)○○○



<서식 1-5> 영문학위기

*Anyang University*

*Hereby certifies that upon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The trustees of Anyang University have conferred upon*

---

*the degree of*

---

*in recognition of the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is degree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responsibilities.*

*In witness whereof, this degree is given at  
Anyang, Gyeonggi Province, Korea.  
Given under the seal of Anyang University.*

○○ ○, ○○○○

○○○○ Ph.D

*President*

○○○○ Ph.D

*Dean of the Graduate School*

<서식 2> 연구과정 수료증명서

제 호

수 료 증 명 서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과 정 :  
전 공 :  
수료학기 :  
수료일자 :

위의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안양대학교 총장

#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정 2022. 1. 26.  
개정 2024. 6. 20.  
대학원 교학과 031-467-0853

## 제 1 장 총칙-대학원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안양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조에 따라 안양대학교에 설치된 대학원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입학, 편입학, 재입학

**제2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서류, 시험, 면접전형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면접 전형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0.>

② 전형 시기는 전기, 후기로 구분한다.

**제3조(제출서류)** ①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가. 입학지원서

나.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라. 기타 입시요강에 명시하는 서류

### 2. 박사과정

가. 입학지원서

나. 학사학위증명서, 및 석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학사 및 석사과정 전학년 성적증명서

라. 연구계획서

마. 기타 입시요강에 명시하는 서류

### 3. 통합과정

가. 입학지원서

나. 학사학위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라. 기타 입시요강에 명시하는 서류

4. 연구과정

가. 입학지원서

나. 이력서

다. 기타 입시요강에 명시하는 서류

③ 외국 소재 대학 출신지원자는 1항의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성적증명서 : 영문 또는 국문(또는 영문) 번역 공증본
2. 학위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출신학교 국가 주재 한국영사(또는 주한공관영사)확인서, 단, 중국대학은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 학위 인증센터 발행 학위 인증서
3. 기타 입시요강에 명시하는 서류

**제4조(재입학)** ① 총장은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징계에 의한 퇴학 처분으로 제적된 자
2. 재학연한 경과로 인하여 제적된 자

③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재입학 전 취득한 성적과 학적 변동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④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편입학)** ① 총장은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생은 해당 과정 이수에 요구되는 수업연한의 2분의 1 이상을 본 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전적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은 해당학과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교과목에 한하며 성적표상에 “전적대학원 OO학점 인정” 으로 표기하며 인정 가능한 학점은 취득성적이 B 이상으로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최대 18학점, 석사과정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한다. 단, 대신신학대학원 목회학전공은 최대 4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4. 6. 20.>

④ 편입학생의 인정학점에 따른 학기 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석사·박사·통합과정 <개정 2023. 1. 30.>

인정학점	인정학기	편입학기	비고
6학점 이상	1	2	
12학점 이상	2	3	
18학점 이상	3	4	박사, 통합만 해당

2. 삭제 <2023. 1. 30>

3. 신학대학원 목회학과(M.Div) <개정 2023. 1. 30., 2024. 6. 20.>

인정학점	인정학기	편입학기
16학점 이상	1	2
32학점 이상	2	3
48학점 이상	3	4

### 제 3 장 등 록

**제6조(등록금)** ①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실험실습비, 그 밖의 납입금으로 한다.

②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학비 감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졸업 잔여 학점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졸업 잔여학점이 1~3학점인 경우 : 수업료의 1/2
2. 졸업 잔여학점이 4학점 이상인 경우 : 수업료 전액
3. 논문제출자 및 자격시험 미통과자 : 수업료의 1/10

④ 연구등록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10을 납부 하여야 한다.

⑤ 수업기간 단축 신청자는 신청 학기말에 졸업이 확정된 경우 5학기차 납부예정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0.>

**제7조(등록금 반환)** ①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②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③ 휴학 중인 자가 자퇴 또는 미복학 제적된 경우
- ④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제8조(등록금 반환기준)** ① 당해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②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단, 휴학 중인 자가 자퇴 또는 미복학 제적된 경우는 학적 변동이 발생한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 납부금액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 납부금액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 납부금액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③ 1차 분납금만 납부한 학생이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제2항과 같으며, 공제 후 1차 분납금이 반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 4 장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

**제9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원격수업 중 사이버강의로 이수 가능한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③ 교육과정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육과정의 이수구분은 공통선택, 전공선택, 전공필수, 교직으로 구분하며 공통선택은 전공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 30.>
2. 유사과목의 학과 및 전공별 중복 개설을 지양한다.
3. 동일과목을 연속으로 개설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통과목, 전공필수는 매 학기 개설할 수 있다.
4. 교육과정 정기 개편은 2년마다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교과목의 학점은 2학점 또는 3학점을 기본으로 하되, 목회학석사(M.Div.) 과목 및 실기과목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과정의 개설)** ① 학과 및 세부전공에 따른 과목의 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 학기별 재학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1. 박사과정 : 3 과목이내
2. 석사과정 : 3 과목이내

② 전향에도 불구하고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이중언어과정 및 특성화사업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를 제외한 과목의 분반은 허용하지 않는다.

1. 개인연구지도
2. 전공실기

④ 원격수업 개설 교과목 수(학점기준)는 해당 연도 학기별 각 학과(전공)가 개설한 총 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재난 상황 시 원격수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24. 2. 21.>

⑤ 교수 개인별 개설 교과목 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격수업 운영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4. 2. 21.>

**제11조(수업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교학과에서 지정한 방법 및 기간에 수업계획서를 탑재하여야 하며 과목정보, 평가기준, 주차별 세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수업시간 및 장소)** 교과목의 수업 시간 및 수업 장소는 대학원장이 지정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업시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강의시간표상 중복된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④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교과목의 성적은 자동으로 F처리 된다.

**제14조(폐강기준)** 개설 교과목의 수강 신청자가 3명 미만일 경우는 폐강한다. 단, 교육과정 상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재수강)** ① 성적이 C+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시 취득 가능한 성적은 A이하로 한다.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은 재수강한 학기의 성적란에 기재한다.

② 재수강 전에 취득한 성적은 R(Renounce)로 표기하며, 해당 학기 취득학점 및 평점 계산에는 제외하고 산출한다.

**제16조(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① 부모의 강의를 자녀는 가급적 수강하지 않아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의 강의를 자녀가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교수는 반드시 사전에 대학원 교학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부모의 강의를 자녀가 수강한 경우 담당 교수는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성적평가 공정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④ 자녀가 본인의 강의를 수강함에도 학교에 미신고, 성적산출 근거 미제출 등, 위 사항을 위반한 교원은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 한다.

**제17조(수강철회)** 수강신청한 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된 기일내에 수강을 철회할 수 있다.

**제18조(휴강 및 보강)** ① 교과목 담당교원이 결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결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보강 후에는 2주 안에 보강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출석)** ① 출석은 매 교시 점검하여 성적에 반영하며 해당 교과목에 1/4 이상 결석한 자는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② 3회 지각은 결석 1회로 간주하며, 출결 파악 후 중도 퇴실한 경우도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20조(유고결석)** 유고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유고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고사유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의 인정 여부는 대학원장이 결정하며, 유고결석 허용기간은 3주 이내로 한다.

**제21조(성적평가)** ① 성적의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과목의 성격에 따라 P/NP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필답고사
2. 연구과제
3. 구술고사 또는 발표 및 토론 또는 실습
4. 출석

**제22조(성적정정)** 당해 학기의 성적평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

며 성적의 정정은 담당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허용할 수 있다.

**제23조(성적의 보존관리)** 학기말 교학과에 제출된 성적은 학적부에 등재하고 시험답안지 및 기타 성적평가 자료는 과목 담당교수가 5년간 보관한다.

## 제 5 장 학위논문

**제24조(자격시험)** ①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전공종합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특수대학원은 외국어시험을 면제하며 학위논문제출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단, 교육대학원 학생 중 교육부에서 발행한 교원자격증소지자가 학위논문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③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은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제25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 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하며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에 학교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시험의 출제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외국어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 및 통합과정은 7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

④ 외국어시험 대상자 중 응시 시험일로부터 2년안에 TOEFL (PBT 540점, IBT 76점) 또는 TOEIC 700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외국어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해당자는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 및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전공종합시험)** ① 전공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은 12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24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27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 평균 3.0 이상인 자
2.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18학점 이상을 이수하거나 이수예정자로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개정 2023. 1. 30.>
3. 대신신학대학원 신학과(Th.M)는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로 하며 목회학과(M.Div)는 전공종합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 30.>

② 전공종합시험은 학기중에 실시하며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학교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공종합시험의 과목은 학과회의를 거쳐 주임교수가 결정하며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출제위원은 본교의 교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교외의 조교수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해당 주임교수가 위촉하며 위원당 2개 과목까지 출제할 수 있다.
2. 과목은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및 교육과정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아도 해당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기초과목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합친 내용으로 한다.

3. 석사과정은 3개 과목으로 실시하며 과목당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4.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5개 과목으로 실시하며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5. 불합격된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해 재응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응시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27조(지도교수)** ① 대학원장은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2학기 초에 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참작하여 지도교수를 위촉한다.

1. 지도교수는 2년 이내에 정년 퇴임하지 않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으로 위촉하며, 해당 전공 교수가 없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조교수 이상의 외부 교수와 논문 지도 교수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2. 학위논문 작성 중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유학, 휴직, 장기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논문작성시 표절,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학생이 작성한 예비 논문을 학위논문 심사 전에 공개 발표하도록 한다.

**제28조(논문양식)** 합격된 논문은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논문의 크기는 4×6배판(188mm×257mm)으로 한다.
2. 논문은 클로스 양장으로 제본하며, 표지의 색깔은 흑색으로 하고 글자는 금색으로 인쇄한다.
3. <서식 1>, <서식 2>, <서식 3>에 따라 표지, 속표지, 제출서, 인준서 순으로 넣는다.
4. 본문은 국문 논문 개요, 차례, 서론, 본론, 결론, 자료 및 참고문헌, 영문요약(Abstract)의 순서로 작성한다.

**제29조(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박사 학위취득예비심사신청서
2. 박사과정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실적서 및 학회지 또는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사본 2편 이상
3. 외부논문심사위원카드(해당자)
4. 예비심사용 논문(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5.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및 연구윤리에 관한 소정의 교육 이수 수료증 각 1부.

② 학위청구논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중언어과정의 경우 지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국문번역본(논문초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 ① 대학원장은 주임교수가 제청한 심사위원 중에서 석사의 경우 3인 이상, 박사의 경우 5인 이상의 논문심사위원을 구성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심사위원이 된다.
2. 박사학위 심사위원에는 1인 이상 3인 이하의 외부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심사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논문의 내용과 동일한 분야의 인사라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장 1인을,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여, 권한과 위촉사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심사위원장은 논문 지도교수를 제외한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고 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며, 부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보좌하고 심사위원장의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

**제31조(학위청구논문 심사)** ① 논문심사는 석사과정은 1회, 박사과정은 2회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하며 심사위촉일로부터 석사의 경우 1개월 이내, 박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 첫번째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개인별로 수행한다.
2. 두번째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전원과 논문제출자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심사의견을 대체할 수 있다.
3. 예비심사 결과 학위청구논문의 연구내용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연구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1학기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4. 본 심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심사에서 지적 및 수정보완을 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한다. 공개심사 후 재수정 보완 사항과 논문의 합격 여부를 판정하여 심사위원장은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통보한다.

②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경우 “가” 70점 미만인 경우 “부” 로 평가하며 석사는 심사위원 전원 출석에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과정은 심사위원 4인 이상의 출석에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이 ‘가’ 로 평가하면 합격한 것으로 한다.

**제32조(학위논문 제출)** 논문심사에 통과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인쇄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 클로스 양장제본 5부(논문심사위원 날인 1부 포함), 학위논문 이용동의서 1부, 논문이 저장된 USB 1개
2. 박사과정 : 클로스 양장제본 5부(논문심사위원 날인 2부 포함), 학위논문 이용동의서

1부, 논문이 저장된 USB 1개

**제33조(학위수여자격)** ① 대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 수여 여부를 심의한다.

1. 과정수료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정규학기 등록을 완료한 자
2. 취득한 학점의 평균이 B(평점평균 3.0)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5. 석사과정의 경우 학과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학위논문 제출 대체 요건을 이수한 자

②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으로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단, 이중 언어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제외한다.

**제34조(명예박사 학위수여)** ① 명예박사학위의 수여 대상자는 일반대학원장의 발의로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위 중별을 결정한다.

② 명예박사학위 수여의 의결은 대학원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박사 학위기는 국문으로 작성하되, 외국어로 된 학위기를 동시에 수여한다.

#### 부 칙

1. 이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은 2022 년 1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신학대학원 목회학과의 전공종합시험은 2022학년도 8월 졸업자부터 폐지한다.

#### 부 칙

1. 이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은 2023년 1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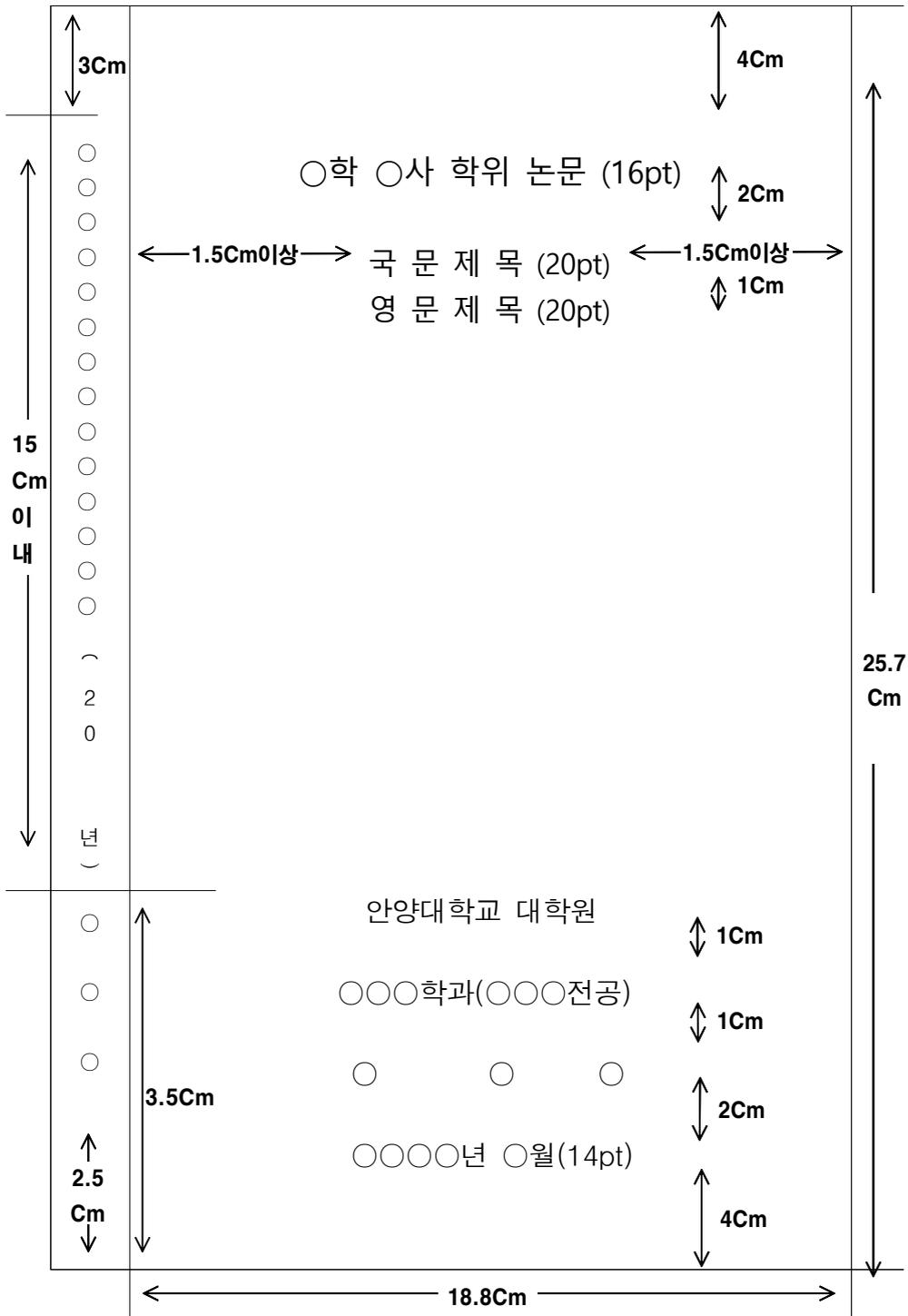
1. 이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은 2024년 2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이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은 2024년 6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서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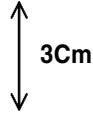
논문 겹속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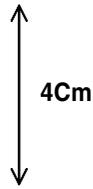


<서식 3>

인준서



인 준 서



이 논문을 ○ ○ ○의 ○○학 ○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년    월    일

박사 { 위원장 \_\_\_\_\_  
      { 위원     \_\_\_\_\_ ← 3Cm →  
      { 위원     \_\_\_\_\_

석사 { 위원장 \_\_\_\_\_  
      { 위원     \_\_\_\_\_

<서식4 >

영문표지

